

「2017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」 소득 재판정 및 지침변경사항 안내

1 개요

- 지침 개정, 소득 변동에 따라 매년 정부지원 대상 적격여부 확인
 - '17년 사업 지침은 '17년 1월 1일부터 개시
 - '16년 정부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기존 이용자는 유형을 유지한 상태로 기한 내에 재판정 신청
 - * 재판정 시 등급이 변경되면 기존 서비스 이용 신청은 반려되며 재신청하여야 함

2 정부지원 신청

① 기존 정부지원 이용자 * 시간제 A 가, 나, 다형 및 B 가형 / 영아종일제 가, 나 다형

- 기존 유형을 유지한 상태로 1월 서비스 이용이 가능
 - '17년 1월 1일부터 ~ 22일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포(bokjiro.go.kr)에 접속하여 정부 지원 재판정 신청
 - '17. 1월말까지 정부지원 유형 결정(재판정)을 받지 않으면, 2월 1일부터 아이돌봄시스템에서 정부 미지원으로 일괄 변경

② 2017년 신규 신청자

- 시간제 신규 신청 시 결정 정보 전송일에 급여 개시
- 영아종일제 신규 신청 시 익월 1일 급여 개시
- 정부지원 변경 시(시간제↔영아종일제 / 양육수당, 보육료 등 영유아복지 ↔영아종일제) 익월 1일 급여 개시
 - * 정부 미지원 가정은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서비스 이용 가능

3 2017년 아이돌봄 지침 주요개정사항

1. 서비스 이용요금은 시간당 6,500원으로 동결

< 2017년 정부지원 대상 범위 >

유형	소득 기준	시간제(시간당 6.5천원)				영아종일제 (월 130만원) 0~2세	
		A형		B형		정부 지원	본인 부담
		정부 지원	본인 부담	정부 지원	본인 부담		
가형	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(4인 가구 기준 2,680천원)	4,875원	1,625원	4,225원	2,275원	91만원	39만원
나형	기준 중위소득 85% 이하 (4인 가구 기준 3,797천원)	2,925원	3,575원	-	6,500원	65만원	65만원
다형	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 (4인 가구 기준 5,361천원)	1,625원	4,875원	-	6,500원	39만원	91만원
라형	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	-	6,500원	-	6,500원	-	130만원

* (A형) '10.1.1. 이후 출생 아동, (B형) '09.12.31. 이전 출생 아동

2. 보육교사형의 요금은 7,800원에서 7,150으로 인하

유형	소득 기준	보육교사형 (월 143만원, 200시간)	
		정부지원	본인부담
가형	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(4인 가구 기준 2,680천원)	91만원	52만원
나형	기준 중위소득 85% 이하 (4인 가구 기준 3,797천원)	65만원	78만원
다형	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 (4인 가구 기준 5,361천원)	39만원	104만원
라형	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	-	143만원

3. 영아종일제 서비스대상을 기존 만24개월에서 만36개월로 확대

* 2016년 12월 만24개월이 되는 아동도 기존 유형으로 2017년 1월 서비스신청 가능

4. 아동추가 시 중복 시간 내에서 시간제 최소이용시간을 '1시간'으로 조정

구 분		이용시간				이용가능 여부
		7시	8시	9시	10시	
유형 1	A아동	■	■			가능
	B아동					
유형 2	A아동	■	■			가능
	B아동			■		
유형 3	A아동	■	■			가능
	B아동			■	■	
유형 4	A아동	■	■			불가
	B아동			■	■	

참고 2017년 유형별 소득기준 변경사항

□ 2017년 기준 중위소득

구분	1인 가구	2인 가구	3인 가구	4인 가구	5인 가구	6인 가구
금액(월/월)	1,652,931	2,814,449	3,640,915	4,467,380	5,293,845	6,120,311

□ 소득 판정기준

유형	2016년	2017년
가	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(4인 가구 기준 2,635천원)	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(4인 가구 기준 2,680천원)
나	기준 중위소득 85% 이하 (4인 가구 기준 3,733천원)	기준 중위소득 85% 이하 (4인 가구 기준 3,797천원)
다	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 (4인 가구 기준 5,270만원)	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 (4인 가구 기준 5,361천원)
라	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	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

* 건강보험료 소득산정은 「보건복지 급여·서비스 기준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12조제4항에 따른 '17년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에 의함